



2020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안내

2020. 01

I

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요

II

2020년 세부 자금 별 지원계획

KOSME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



01. 2020년 정책자금 운용방향

혁신성장 및 고성장 창업기업의 도약과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투자 중심의 예산 대폭 확충(4.59조원, 2019년 당초 3.67조원 대비 0.92조원 ↑)

- **(혁신창업사업화자금)**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신규 자금 신설*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제고를 위한 예산 확대(2.08 → 2.55조원, **0.47조원 ↑**)
- **(신성장기반자금)**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성장 잠재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등 예산 규모 확대(0.88 → 1.33조원, **0.45조원 ↑**)

【'20년 중진공 정책자금 운영 규모(4.59조원)】

	창업기(2.55조원)	성장기(1.73조원)	재도약기(0.31조원)
방향	·창업 및 시장진입 ·성장단계 디딤돌	·성장단계 진입 ·시설자금위주 지원	·재무구조 개선 ·정상화/퇴출/재창업 선순환
세부 사업	·혁신창업사업화자금 -창업기반, 개발기술, 일자리창출촉진자금,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	·신성장기반자금 ·신시장진출지원자금 ·투융자복합금융	·재도약지원자금 -재창업, 사업전환, 구조개선 ·긴급경영안정자금

02. 정책목적 및 방향

정책목적

- 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 · 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

정책방향

- ☑ 고용창출, 수출, 시설투자 중소기업 및 혁신성장 분야 등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에 대한 자금 우선 지원
- ☑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성장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장기자금 중심 공급
- ☑ 기술 · 사업성 평가를 통해 미래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직접 · 신용 대출 위주 지원

용자대상

- ☑ 용자대상 : **【중소기업기본법】상의 중소기업**
 -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용자계획에서 규정하고, 주된 사업의 업종이 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자 대상에서 제외



03. 정책자금 규모

(단위 : 억원)

사업	예산	내역사업	사업분야
 혁신창업사업화	25,5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혁신기반지원자금 • 일자리창출촉진 • 개발기술사업화 • 미래기술육성자금 • 고성장촉진자금 	<p>창업기업 생산기반 마련지원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지원 특허개발기술 등 기술사업화 지원 업력 3년이상 10년미만, 혁신성장 분야 업력 3년이상 10년미만, 경영성과 우수기업</p>
 투융자복합금융	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성장공유형 • 스케일업금융 	<p>전환사채 인수방식 회사채 인수로 유니콘기업 육성</p>
 신시장진출지원자금	2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• 수출기업의 글로벌화 	<p>내수기업의 수출 촉진 수출 유망기업의 수출 지원</p>
 신성장기반자금	13,3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혁신성장지원자금 •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	<p>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지원</p>
 재도약지원자금	2,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전환, 무역조정 • 구조개선전용 • 재창업 	<p>업종전환(추가) 및 FTA 무역피해기업 부실징후기업의 선제적 지원 실패 기업인에 대한 재기지원</p>
 긴급경영안정자금	1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해중소기업 • 일시적경영애로 	<p>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피해기업 경영애로기업 안정적 경영기반 조성</p>
예산 총계 : 45,900			

04. 정책자금 기준금리

정책자금 금리 = ① 기준금리 + ② 사업별 가감금리

① 기준금리 ('20.1분기 2.15%)

중소벤처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* 연동(조정계수 차감)

* 분기별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 전전분기 종료월 21일 ~ 전분기 종료월 20일 '누적 평균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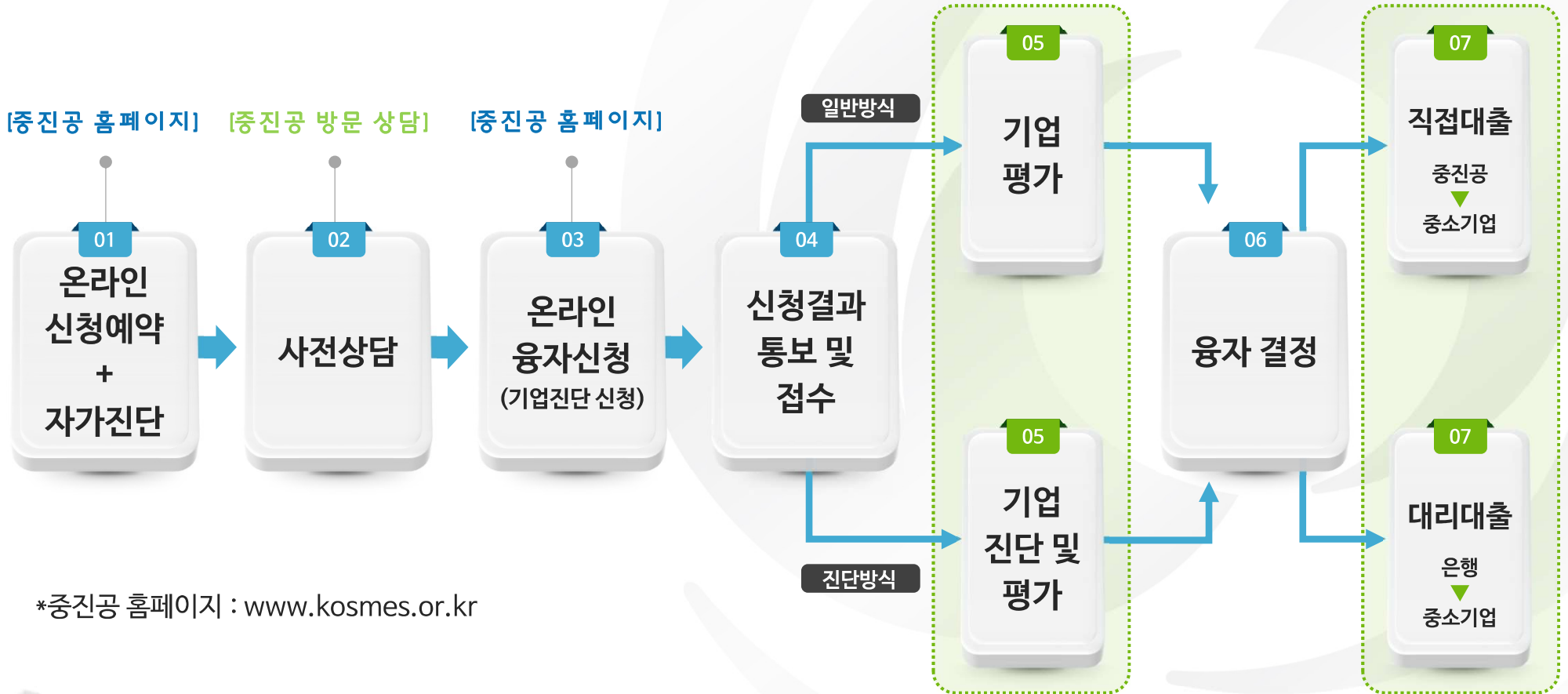
② 사업별 기준금리 그룹

	자금명	사업별 기준 금리
A그룹	혁신창업사업화자금 [창업기반지원, 일자리창출촉진]	정책자금 기준금리 - 0.30%p
B그룹	혁신창업사업화자금 [미래기술육성, 고성장촉진]	정책자금 기준금리 - 0.20%p
C그룹	혁신창업사업화자금 [개발기술사업화] 재도약지원자금 [재창업, 사업전환, 구조개선전용] 신시장진출지원 [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, 수출기업의 글로벌기업화] 신성장기반자금 [혁신 성장유망(협동화), 제조현장스마트화]	정책자금 기준금리
D그룹	신성장기반자금 [혁신성장유망] 긴급경영안정자금 [일시적경영애로]	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50%p

* 시설자금은 0.3%p 금리 우대

* 무역조정지원기업은 2.0%, 재해 중소기업은 1.9% 고정금리 적용

05. 정책자금 지원절차



*중진공 홈페이지 : www.kosmes.or.kr

06. 용자 신청 및 접수

용자신청은 **온라인신청예약**→**사전상담**→**온라인신청** 순으로 진행되며
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온라인신청 필요

- * 단, 지역본(지)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
- *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해중소기업은 온라인 신청예약 단계 생략가능

온라인신청예약

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예약 후 신청대상 여부 및 신청 자금 적정성 등 온라인 '자가진단' 실시

* 허위 진단결과 제출기업은 발견일로부터 1년간 정책자금 신청 제한

사전상담

자가진단 결과 신청가능 대상인 경우, 해당 지역본(지)부에 방문하여 상담 진행

* 자금 신청수요 집중시기에는 지역본(지)부에서 사전상담 기간 조정 가능

온라인신청

사전상담 완료 후 신청기회를 부여받은 기업은 정한 기한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용자신청서 제출

* 월 사전상담 기업이 지역본(지)부별 실태조사 가용인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, 정책 우선도 평가를 실시하여 시청기회 부여 여부 결정 가능

07. 용자제한 대상

용자제한기업

- ①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
-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"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"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
- ③ 최근 3년 이내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등으로 용자제외 제재조치 된 기업
-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⑤ 휴·폐업중인 기업. 단,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가동 중인 기업으로 간주하여 용자대상에 포함
- ⑥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, 유가증권시장(코넥스제외)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등 우량기업
- ⑦ 업종별 용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기업(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기준)
- ⑧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
- ⑨ 중진공 지정부실징후기업,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등 한계기업
- ⑩ 용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
- ⑪ 정부,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용자, 보증, R&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(누적)을 초과하는 기업(<http://sims.go.kr>을 통해 확인)
- ⑫ 정책자금 졸업기업 : 중소기업 정책자금(운전자금) 지원금액 25억원(누적) 초과기업
- ⑬ 최근 3년 이내 중소기업부 소관 정부 연구개발비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으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 된 기업
- ⑭ 최근 5년간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
-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공고에서 확인

※ 용자제한 사유(⑦, ⑨항)에 해당하더라도, 신기술인증기업(NEP·NEI) 등 우수기술 보유기업에 대해 특별심사위원회를 거쳐 용자지원 가능

※ 기타 용자제한기업 항목(①~⑭)별 적용예외는 사업별 용자계획에서 규정

※ 접수시기 예외 :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 신청 불가

08. 주요 변경사항

☞ 용자제한 기업 中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

☞ 제도구성

- ☑ 기업당 5년간 3회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, 추가 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용자결정 시 심의 절차를 신설하여 성과우수 기업이나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우수한 기업을 지원

〈참고: 정책자금 지원 횟수제한 변경사항 요약〉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횟수 제한	최근 3년 이내 2회까지	최근 5년 이내 3회까지
대상	일부 자금 (혁신성장유망, 긴급경안)	전 자금 공통
횟수 산정 예외 (공통)	① 수출 향상기업 (최근 1년 직수출 실적 50만불 & 20% 이상 증가) ② 고용창출 기업 (최근 1년 10인 이상) ③ 시설투자 기업 (최근 1년 10억원 이상)	① 재해자금 ② 투융자복합금융 ③ 시설자금 ④ 브랜드K 인증기업 ⑤ 소재·부품·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⑥ 소재·부품·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⑦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
횟수 산정 예외 (긴급경안)	④ AI 피해기업 ⑤ 보호무역 피해기업(중국) ⑥ 불공정거래·기술침해 피해기업	-
초과지원 가능 대상	-	① 고용창출기업 (최근 1년 10인 이상) ② 시설투자 기업 (최근 1년 10억원 이상) ③ 수출 향상기업 (최근 1년 직수출 실적 50만불 & 20% 이상 증가) ④ 혁신성장 업종 영위기업 (용자공고 별표 3) ⑤ 소재부품 업종 영위기업 (용자공고 별표 5)
초과지원 절차	-	- 4회차(지역본·지부장) - 5회차 이상(용자심의위원회)

09. 정책자금 평가방식

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한 기술사업성 평가

기업의 기술성, 사업성, 미래성장성, 경영능력,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**기업평가등급을 산정**
 (단,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)

Version 1.0

- 시기 : '04년
- 주요내용 : 기업평가 모형 도입

Version 2.0

- 시기 : '05~'08년
- 주요내용 : 평가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

Version 3.0

- 시기 : '09~'18년
- 주요내용 : 기술사업성 중심 평가 모형 개편 및 고도화

기술사업성 등급을 기본 등급으로 산출하고, 신용위험등급을 최소 조정 반영하여 **기업평가 등급 산출**

* 업력 3년 미만, 재창업자금 대상 기업의 경우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출

기업평가

기술 사업성 평가

기술사업성평가모형 » 기술사업성 평점 » 기술사업성 등급

신용 위험 평가

재무모형 » 재무평점
 계량비재무모형 » 계량비재무평점
 대표자모형 » 대표자평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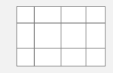
Model Combination

신용 위험 등급

최소 조정 반영

용자지원결정

기업 평가 등급



10. 정책자금 집행방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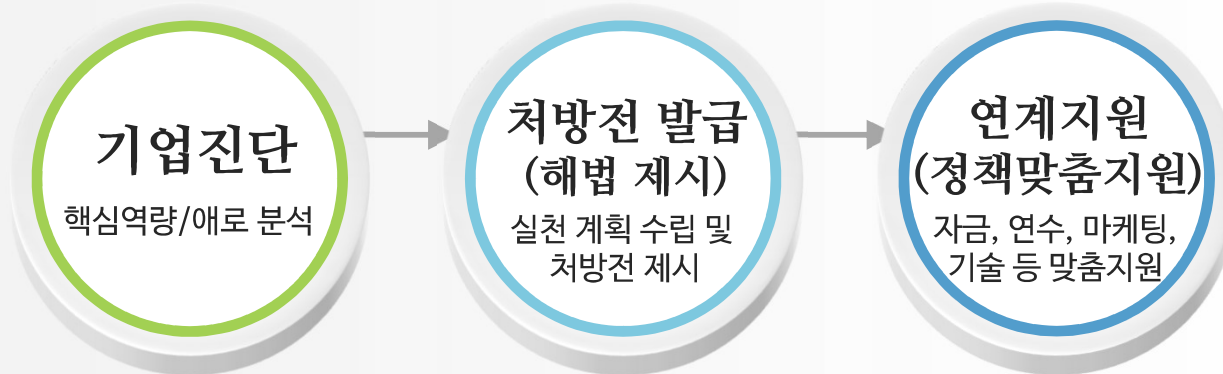
진단기반 맞춤형연계지원

* 기업 여건에 따라 Two-Track(기업진단 연계 또는 일반지원)으로 운영

	기업진단 연계 방식	일반 방식
지원절차	진단신청 → 진단·평가 → 자금지원+맞춤연계	자금신청 → 평가 → 자금지원
처리기간	기업진단의 별도 운영기준에 따름	기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

기업진단 프로그램 추진체계

* 업종 전문가가 중소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(기업애로)를 도출한 후 처방전(해법)을 제시하고, 치료를 위한 자금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



11. 정책자금 연대보증 폐지

연대보증인 폐지

- ✓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창업 및 재도전을 어렵게 하는 연대보증 폐지 추진
- ✓ 2018년 3월 이후 신청, 접수하는 정책자금부터 연대보증 폐지
- ✓ 책임경영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면제하고 탈락한 기업은 지원 제외

책임경영심사제도

결격요건

- 실질기업주 및 법인의 경영관련 법률위반 및 금융질서 문란 행위 여부를 심사

투명경영 지표

- 법인 및 실질기업주의 책임경영과 투명경영 의지를 평가

사회적책임 지표

- 일자리창출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노력도를 심사

*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창업 3년 미만 신청기업, 재창업자금 신청기업 등은 결격요건만 심사

* 사회적 책임지표는 가점항목으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, 사회적 경제기업 등을 우대

12. 정책자금 상환절차

상환안내

- ✓ 대출금 지급 후 2일(토요일, 휴일제외) 후에 상환기일표를 등기로 발송
- ✓ 원리금 납입기일 20일 전에 대출원리금 상환안내문을 e-mail, 우편 등으로 안내
- ✓ 중진공 홈페이지 온라인 고객으로 등록된 업체는 상환 2일전에 SMS로 별도 통지

상환방법

	원금	이자
상환방법	매 월납 또는 분기납 선택	매월 후취

- ✓ 자동납부 희망업체는 자동이체를 활용
- ✓ 업체 희망에 따라 조기상환 가능
- ✓ 일시적 자금경색 회복을 위한 상환유예 가능

납입기일

- ✓ 선택한 상환방법에 따라 대출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결정

12. 정책자금 상환절차

기업자율 상환제도

✓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

* 다만,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·납부

* 대상자금 : 혁신창업사업화자금, 긴급경영안정자금, 사업전환자금 中 운전자금

상환비율

✓ 최소상환 비율인 15%이상 중에서 자율 선택 가능

(예시)

✓ 대출 이후 3년차에 원금의 $15\% + \alpha$, 4년차에 대출원금의 $15\% + \alpha$, 5년차에 $100\% - (3년차 + 4년차)$ 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(기한 내 자율적으로 상환)

구분	1년	2년	3년	4년	5년
상환비율			$15\% + \alpha$	$15\% + \alpha$	$100\% - (3년차 + 4년차)$
상환금액			7.5백만원 $+ \alpha$	7.5백만원 $+ \alpha$	35백만원 - 2α

*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

12. 정책자금 상환절차

소액 성실상환제도

- ✓ 상환의지가 있는 경영애로 기업에 '소액조정기간(6개월)' 간 매월 상원예정원금의 20%(소액조정금액)를 매월 상환하도록 조정하고, 성실채무 이행 시 남은 대출 원금에 대해 만기 1년 연장 및 매칭형 출자전환 등 지원

[소액 성실상환 연계지원 지원절차]









만기연장

- ✓(대상) 소액조정기간 종료 시 해당 대출건에 대해 신용통합정보 및 기업일일여신 조회 상 연체 기록이 없는 기업
- ✓(절차) 만기연장 대상 해당 시 업체와 대출변경약정 체결 후 전산프로세스 등록을 통해 업무 처리

13.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

제3자 부당개입 제재기준

-  (계약 불이행)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,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(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)
-  (대출심사 허위 대응) 재무제표 분식, 사업계획 과대표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수령한 경우 (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)
-  (허위 대출약속)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(요건미흡, 평가탈락 기업 등)에 정책자금 신청 전 대출을 약속하고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(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)
 -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할 경우
-  (부정청탁) 정부기관, 중진공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, 착수금을 수령하는 경우 (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, 청탁금지법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위반)
-  (정부기관 등 사칭)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경우 (형법 제 347조에 의한 사기)
-  (부당 보험영업 행위)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주거나,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(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의 제공금지)

13.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금지

제3자 부당개입 제재조치

부당개입 행위자

- 부당개입 활동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피해가 발생되거나 정책목적성이 훼손될 경우 형사 고소·고발, 자격정지 및 정부사업 참여 제한 조치

부당개입 중소기업

- 융자자금 조기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

신고자

- 범죄사실이 확정된 경우 포상금 지급

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

- (오프라인)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(지)부
- (온라인) 증진공 홈페이지 → 참여광장 →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온라인신고센터

I

중소기업
정책자금의
개요

II

2020년
세부 자금 별
지원계획

KOSME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



01.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창업기반지원자금)

창업기반지원자금

- 사업목적**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·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도모
- 용자규모** 25,500억원 (청년전용 창업자금 1,600억원, 개발기술사업화 3,500억원 포함)



02 용자대상

-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제2조에 의한 창업자
 - * 단, 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 제외), 기타 개인 서비스업(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외)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
- 사업개시일 7년 미만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중인 자 (최종 용자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)
 - * 일자리창출촉진 : 3년연속 일자리 증가 기업,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,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기업 등 정부 일자리 사업 참여기업
 - * 미래기술육성자금 :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미만인 혁신성장분야(별표3) 영위기업
 - * 고성장촉진자금 :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상 10년미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이상인 중소기업 중 고성장·혁신기업

03 대출금리(기준금리)

- 정액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
- *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2%p 차감

04 대출기간

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 4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- 투자자금 7년 이내(거치 3년 포함)
- 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
05 대출한도

- 업체당 잔액기준 60억원 이내(지방소재기업 70억원)
- 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
- 단,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수출 50만불 이상이며 20% 이상 증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, 약속어음 폐지, 감축기업, 여성기업, TIPS성공 졸업기업, 미래기술육성자금, 고성장촉진자금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(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)

06 대출방법
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
01. 혁신창업사업화자금(청년전용창업자금)

청년전용창업자금

- 사업목적** 청년층의 기업가 정신 고취 및 창업 활성화
- 용자규모** 1,600억원



01 용자대상

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, 업력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 *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(용자시점에 사업자등록 필요)

02 대출금리(고정금리)

연 2.0%

03 대출기간

시설 10년 이내(거치 3년)
 운전 6년 이내(거치 3년)
 *운전자금 대출 기업은 '기업자율 상환제도' 선택가능

04 대출한도

제조업종 2억원 이내
 기타업종 1억원 이내
 * 대출한도는 운전 및 시설자금 합산 금액임.

05 지원방식 (용자상환금조정형)

중진공이 자금 신청.접수와 함께 멘토링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용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
 *용자상환금 조정형 :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용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

01. 혁신창업사업화자금(개발기술사업화)

개발기술사업화자금

사업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, 개발기술의 제품화·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

용자규모 3,500억원

① 다음 하나의 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업

-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(완료)한 기술
- 특허,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
-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
- *술(NET), 전력신기술, 건설신기술, 보건신기술(HT) 등
- 국내외의 대학, 연구기관, 기업,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
- 『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』 상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
-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)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
-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
- 특허청의 IP-R&D 전략지원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

② 자체기술을 사업화 하고자 하는 Inno-Biz, Main-Biz, 벤처기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,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1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

- *단,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개발기술사업화자금 대상에서 제외
- *개발기술사업화자금은 업력과 상관없이 지원

0 용자대상

02 대출금리 (기준금리)

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 4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
03 대출기간

투자자금 7년 이내(거치 3년 포함)

*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
04 대출한도

업체당 연간 20억원 이내(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)

*단, 수출향상기업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
05 대출방법

중진공 직접대출

02. 투융자복합금융

+ 투융자복합금융

- 사업목적** 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 도모
- 융자규모** 2,000억원

신청 대상

성장
공유형

기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크고
기업공개 가능성이 있는 기업

스케일업
금융

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마련하고
직접금융 시장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

02. 투융자복합금융

용자 조건



회사채·우선주 인수 방식

- ☑ 중소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사채, 우선주 인수 방식으로 자금지원
 - ☑ 지원기간 내 IPO가능성 등 판단하여 전환권 행사(중진공 결정)
 - ☑ 미 전환 시 만기보장금리로 분할상환
 - * 업력 3년 미만 : 표면금리 0.25%, 만기보장금리 3%
 - * 업력 3년 이상 : 표면금리 0.50%, 만기보장금리 3%
- * 우선주 인수방식은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은 해당사항 없음
단, 중진공의 상환권 행사 시 금리는 대출(익일)부터 상환일까지 연 5% 적용



P-CBO 방식 (스케일업금융)

- ☑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지원
 - * 선·중순위 증권은 민간에 매각하고, 후순위 증권은 중진공이 인수하여 조달된 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
- ☑ 발행 금리 및 상환 방법은 발행차수, 발행증권,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

회사채·우선주 인수 방식

P-CBO 방식

대출한도

기업당 60억원 이내 (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)

기업당 150억원 이내

대출기간

5년 이내 (거치기간 2년)
* 업력 7년 미만 : 7년 이내

3년 이내

03. 신시장진출지원자금(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)

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

- 사업목적**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,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
- 용자규모** 500억원

01 용자대상

-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(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미만) 중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
- 스타트업 : 해외진출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 사업에 참여한 업력 7년 미만(신청·접수월 기준) 중소기업
 - 온라인 수출기업 :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생산품(용역, 서비스)을 수출하는 중소기업, 중기부 전자상거래활용사업 참여기업
 - 브랜드K 인증기업 : 정부가 혁신기술 기반의 "소비재 우수 제품" 제조기업으로 인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
 -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(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), 수출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 - 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

02 용자범위

- | 해외마케팅 등 판로개척, 해외인증 획득, 수출품 개발,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운전자금

03 대출금리 (기준금리)

-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04 대출기간

- |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- * 스타트업은 한도거래(만기 3년)방식 선택 가능

05 대출한도

- | 기업당 연간 5억원 이내
- * 한도거래 방식을 선택한 스타트업의 대출한도는 5천만원 이내

06 대출방법

- | 중진공 직접대출

03. 신시장진출지원자금(수출기업의 글로벌화)

수출기업의 글로벌화

- 사업목적**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, 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
- 용자규모** 1,500억원

01 용자대상 | 수출 유망기업(최근 1년간 수출 10만불 이상) 중 **생산품**(용역, 서비스 포함)을 수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

02 용자범위 | 수출품 생산비용 등에 소요되는 **운전자금** 및 수출품 생산을 위한 **생산설비, 시험검사 장비** 도입 등에 소요되는 **시설자금**(건축 및 사업장매입 자금 제외)

03 대출금리
(기준금리) |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04 대출기간 |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 4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
05 대출한도 | 기업 당 연간 20억원 이내 (운전자금은 10억원 이내)
* 단, 브랜드K인증기업의 대출한도는 연간 30억원 이내

06 대출방법 | 중진공 직접대출

04. 신성장기반자금

신성장기반자금

사업목적

-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 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
-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원천인 제조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촉진

용자규모

13,300억 원
 * 혁신성장유망 8,300억원,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5,000억원

용자 대상

혁신성장지원자금

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, 협동화·협업사업 승인기업, 한중FTA취약업종 영위기업

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

스마트공장 추진기업 중 '스마트공장 보급사업' 등 참여기업, 4차산업혁명 관련 신산업·신기술 영위기업, ICT 기반 등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

*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및 생산현장디지털화 사업 등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75%까지 상향

*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국내 복귀기업의 경우 <2.공통사항> 바. 용자제한기업 ⑦항 적용 제외

04. 신성장기반자금

01 용자범위

- ① 시설자금 : 생산설비 · 시험검사장비도입, 사업장건축(토지구입비 포함), 임차보증금, 사업장 확보(매입, 경 · 공매)자금, 유통 물류시설 설치, 기타 생산성 향상, 생산환경 개선자금 등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,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(협동화 · 협업사업승인기업은 건축허가 조건 적용 배제)
- ② 운전자금 :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가동비(시설자금 50% 이내), 별도기준 충족 시 운전자금 용자가능

02 대출금리 (기준금리)

-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5%p 가산
* 협동화 · 협업사업 승인기업,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,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기준금리 적용

03 대출기간

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 4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
*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
04 대출한도

-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(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)
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
* ①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%이상 증가), ②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③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 기업(금회 포함), ④ 협동화(협업화) 승인기업, ⑤ 경영혁신 마일리지 500마일리지 사용기업, ⑥ 제조현장스마트화 자금
① ~ ⑥ 에 해당하는 기업은 운전자금을 연간 10억원 이내에서 지원

05 대출방법
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

05. 재도약지원자금

재도약지원자금

- 사업목적** 사업전환, 구조개선,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
- 용자규모** 2,100억원

0 용자대상

재창업자금

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기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-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-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4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를 통과한 자
 - * 성실경영 평가 : 재창업자금 신청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, 고의부도,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등을 평가
- 신용 미회복자는 신용회복(신복위)승인, 변제계획인가(개인회생), 파산면책결정의 경우 등을 통해 '연체 등' 의 정보가 해제된 경우 지원결정 가능

구조개선전용자금

다음 중 1가지 이상 요건 충족하는 중소기업

-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에 해당되는 기업
 - *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(A,B,C 등급), 은행권 자체 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,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'요주의' 등급 이하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(-),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
- 중진공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 지정 경영애로(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) 기업
-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
-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 정보 등록 기업 중 강력한 자구노력(자산매각, 대주주 감자 등) 추진기업
-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기업(회생절차 종결 후 3년 이내 기업 포함)
-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'구조개선' 대상 판정기업
-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추천한 물납기업

05. 재도약지원자금

사업전환자금

① 업종전환 등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기업

사업전환의 개념

※ 용자 신청은 사업전환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

	업종전환	업종추가
전환내용	현재 영위업종 사업용 자산 양도, 폐기 →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	현재 영위업종 규모(매출 또는 상시근로자) 축소 또는 유지 → 새로운 업종 추가
전환비중	3년 내 완전전환	3년 내 30% 이상

- * 전환비중 : 전환(추가)업종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
- * 새로운 업종의 기준 :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은 세 분류(4단위),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, 소분류(3단위)가 다른 업종
- * 제조업 ↔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
- *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,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

② FTA체결 상대국으로부터 무역피해가 인정되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 받은 중소기업

※ 용자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

	피해인정기간	피해정도 및 비교시점
무역피해를 입었을 경우	지정신청일 이전 2년 이내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%이상 감소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상기 피해에 상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무역피해를 입을 것이 확실한 경우	지정신청일 이후 1년 이내 발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개월 또는 1년간의 총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동기 대비 10%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(단, 영업이익, 고용, 가동률, 재고 등 변화를 종합적 고려)

③ 『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

※ 용자 신청은 사업재편계획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

05. 재도약지원자금

0 용자범위

- 시설자금 : 생산 및 시험검사 설비, 정보화 설비, 유통 및 물류시설, 사업장건축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, 사업장확보자금(매입, 경공매) 등
- 운전자금 :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, 사업전환,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 소요경비
- *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 가능

0 대출기간

- 시설자금 10년 이내(거치 4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- *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5년 이내
- 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거치기간 3년 이내(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은 거치기간 4년 이내)
- * 재창업 및 사업전환자금의 운전자금은 담보 및 신용대출 6년 이내(거치 3년 이내 포함)

0 대출금리 (기준금리)

-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- * 무역조정지원기업은 연 2.0% 고정금리 적용

0 대출한도

- 업체당 연간 60억원 이내(지방소재기업 70억원 이내)
- * 단, 수출향상기업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
- *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100억원 이내
- * 구조개선전용자금 : 연간 10억원 이내(3년간 10억원 이내)
- *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기업당 5억원 이내

0 대출방법

-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
- * 구조개선전용자금,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및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직접대출



06. 긴급경영안정자금

🔗 긴급경영안정자금

- ✔ **사업목적** 경영애로 해소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
- ✔ **용자규모** 긴급경영안정자금 1,000원

01 용자대상

용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

-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(중소벤처기업부 고시)에 따라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피해 복구비용

02 용자범위

- * 시장, 군수, 구청장 또는 읍, 면, 동장이 발급한 재해 중소기업 확인서류 제출
- *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, <2.공통사항>바.용자제한기업 ①, ⑦항 적용을 예외로 하며 ①항 예외 적용의 경우 세금 체납 처분 유예에 한함
-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회생가능성이 큰 기업의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
 - * 환율피해, 대형사고,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(조선, 자동차, 해운, 철강, 석유화학) 관련 피해, 대기업 구조조정,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, 기술유출 피해, 보호무역피해,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기술침해 등에 따른 피해, 한·중 FTA 피해, 일본수출규제관련 피해 등

03 대출금리 (기준금리)

-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5%p 가산
- * 재해중소기업(고정금리) : 연 2.1% 고정금리 적용

04 대출기간

- 5년 이내(거치 2년 포함)

05 대출한도

-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 (3년간 10억원 이내)

06 대출방법

- 중진공 직접대출

참고 정책자금 상담·문의처 (중진공 지역본·지부)

수도권

- 서울 (금천구) 02) 2106-7442
- 서울 동남부(서초구) 02) 2023-4314
- 서울 북부(중구) 02) 769-6419
- 인천 (연수구) 032) 837-7041
- 인천 서부(서구) 032) 560-2360
- 경기(수원시) 031) 260-4900
- 경기동부(성남시) 031) 760-9000
- 경기서부(안산시) 031) 783-0600
- 경기남부(화성시) 개소예정
- 경기북부(고양시) 031) 920-6700

강원권

- 강원(춘천시) 033) 269-6900
- 강원영동(강릉시) 033) 655-9374

충청권

- 대전세종(대전시) 042) 281-3731
- 충남(천안시) 041) 589-4545
- 충북(청주시) 043) 230-6800
- 충북북부(충주시) 043) 841-3600

경상권

- 대구(대구시) 053) 606-8400
- 경북(구미시) 054) 476-9340
- 경북동부(포항시) 054) 288-7350
- 경북남부(경산시) 053) 603-3325
- 부산(사상구) 051) 630-7400
- 부산동부(해운대구) 051) 745-5926
- 울산(울산시) 052) 703-1100
- 경남(창원시) 055) 270-9753
- 경남동부(김해시) 055) 310-6600
- 경남서부(진주시) 055) 756-3060

전라권

- 광주(광주시) 062) 600-3000
- 전북(전주시) 063) 210-9923
- 전북서부(군산시) 063) 460-9800
- 전남(무안군) 061) 280-8031
- 전남동부(순천시) 061) 729-1556

제주권

- 제주(제주시) 064) 751-2070

*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☎1357

* () 안은 각 지역본·지부 소재지

* 홈페이지(www.kosmes.or.kr) 내 오시는 길, 관할지역 참조

KOSME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
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



감사합니다